글로벌 허브 도시, 부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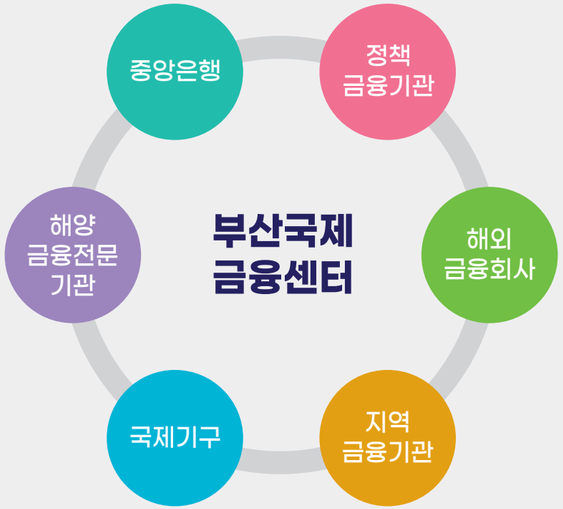

36개 기관 5,326명이 근무 (2024년 기준)

BUSAN

위치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문현동)
부산국제금융센터 52층 (52F, BIFC)

대표번호 051-631-0283

대표메일 info@kbfc.or.kr

@BusanFinanceCenter
https://www.linkedin.com/company/busanfinancecenter/
@kbfc.or.kr
kbfc.or.kr/e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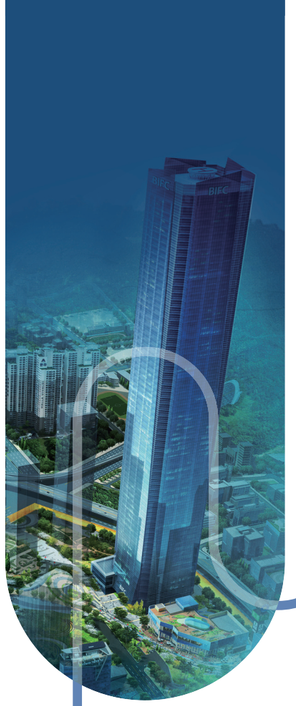

BUSAN THE FINANCIAL HUB

금융중심지, 부산

부산국제금융진흥원
Busan Finance Center

부산 금융기회발전특구

전국 유일 금융 서비스 분야 특구로 지정

• 기회발전특구란?

지방에 기업의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세제·재정지원, 규제특례, 정주여건 개선** 등을 패키지로 지원

비전 금융을 기회로 글로벌 허브도시 도약

목표 기업·인재·자본이 모여드는 금융중심도시 부산

추진전략

- 디지털 금융중심지 완성
- 성장 투자 연관산업 기능 강화
- 해양·파생 금융 혁신
- 정책 금융기관 집적 효과 극대화
- 글로벌 금융중심지 기반 구축

BIFC 사무공간 지원 안내

BIFC 금융클러스터(D-space)

- BIFC 63층 (최상층)
- 국제금융기관 및 국제기구의 업무 수행을 위해 2021년 조성

신청자격 (Qualification)

- 부산국제금융센터(BIFC)로 신규 진입하는 상주 인원 1인 이상 외국 금융기관

① 「부산광역시 금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제2조제2호에 따른 금융기관 중 외국 금융기관 (국내 기업과 컨소시엄 구성 가능)
② 핀테크 관련 외국 기업 (국내 기업과 컨소시엄 구성 가능)
③ 국내·외 벤처캐피탈(VC)로서 최근 3년간 펀드투자 규모가 50억 원 또는 미화 500만 달러 이상인 기업
④ 금융 관련 정부기관·공공기관, UN 산하기관 등 국제기구
⑤ 금융산업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법인 또는 기업

지원내용

- 사무공간 : 1인당 10㎡ 내외 제공(입주 규모에 따라 공간 임의 배정)
- 입주기간 : 3년(3년 임대료 무상 지원, 3년 단위 평가로 최장 20년 범위 내 입주 가능)
- 기타 지원 ① 국내 금융업 관련 자문 및 금융·투자 정보 제공
  ② 외국인 임직원 대상 국내 금융 및 생활환경 안내
  ③ 부산국제금융센터 입주 기관 및 기업 간 네트워킹 지원

신청방법

정기 또는 수시 모집

선정절차

서류접수 (정기 또는 수시) → 1차 심사 (서류심사) → 2차 심사 (발표평가) → 입주대상자 선정

문 의

051-888-4862(부산광역시 금융블록체인담당관)
051-631-0283(부산국제금융진흥원 금융연구2실)

부산시 소재 스타트업 육성 공간

부산핀테크허브 U-Space we work BIFC점 (11~15층)

- 금융기술(핀테크, ,빅데이터, AI 등) 기업의 입주공간 조성
- 성장단계별 맞춤형 전문 엑셀러레이팅 프로그램 운영
- 입주지원: http://finpc.org

부산핀테크허브 S-Space 부산상공회의소 3층

- 금융기술 강소기업의 사업환경 조성·지원
- 입주지원: http://finpc.org

B-Space BIFC 21~22층

-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 연계 기업 및 블록체인 기반 창업·신생 기업 지원체계 마련
- 입주지원: http://www.btp.or.kr

BIFC & 기회발전특구 인센티브 안내

BIFC 인센티브

구분		지원대상		세부 내용			
				본사/지역본부 설립	지점 설립	대한민국내 본사/지역본부 이전	대한민국 내 지점 이전
				(해외 → 부산)		(국내 타지역 → 부산)	
국세	법인세 또는 소득세[1]	투자금액 20억 원 이상, 상시 고용인원 10명 이상인 금융기관		최초 소득 발생 과세연도부터 3년간 100%, 그 이후 2년간 50% 감면		미적용	
지방세	취득세[2]			창업(또는 신설)하여 취득하는 재산에 대해 2026년 12월 31일까지 면제			
	재산세[3]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면제			
입지보조금[4]		외국 금융기관	3개국 이상을 관장하는 지역본부 또는 한국본사	용지·건물의 구입비 또는 임차료의 50% 감면 (기관당 50억 원 이내)	미적용	용지·건물의 구입비 또는 임차료의 50% 감면 (기관당 50억 원 이내)	미적용
		국내 금융기관	상시 고용인원 10명 이상인 본사				
고용보조금[4]		최근 3개월 간 상시 고용인원 10명 이상인 외국 및 국내 금융기관		이전 후 신규채용 1인당 60만원 이하 (최대 6개월, 기관당 2억 원 한도)			
교육훈련보조금[4]		내국인 10명 이상을 상시 고용하는 외국 및 국내 금융기관의 지역본부 또는 지점		이전 후 신규고용 교육훈련 1인당 60만원 이하 (최대 6개월, 기관당 2억 원 이내)			
사업용 설비 설치자금[4]				사업용 설비의 설치 등에 필요한 자금의 10% 이내 (회사당 10억 원 이내)			

1)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21 및 동법 시행령 제116조의 26
2) 부산광역시 남구세 감면 조례 제7조 제1항(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21 제3항 의거)
3) 부산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제14조(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21 제3항 의거)
4) 부산광역시 금융산업육성의 관한 조례 제5조, 제6조, 제7조, 제8조, 제12조

기회발전특구

- 수도권 기업이 수도권 내 부동산 처분 후 특구 이전시 **양도차익 소득·법인세**를 특구 내 취득 부동산 처분시까지 **과세이연**
- 특구 내 **가업상속시** '업종변경 제한' 및 상속인의 대표이사 종사 의무' 폐지 등 **사후관리요건 완화**
- 비수도권 특구로 **이전** 및 특구 내 **창업**을 위한 **사업용 부동산** 매입시, 공장 신증설 시 **취득세·재산세 감면**
- 특구 내 **사업장 신설** 또는 **창업**시 **법인세 감면**
- 특구 투자시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비율 가산**